

하남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

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3301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년 7월 31일

발의자 : 김어진 의원

1. 제안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교육과 사용내역 점검을 의무화함으로써 업무추진비의 부당한 사용을 예방하고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.
-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부적정한 집행이 확인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업무추진비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업무추진비의 부당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(안 제8조제1항)
- 나.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,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함(안 제8조제2항)

3. 검토의견

가. 입법 필요성

- 지방의회 업무추진비는 의정활동과 직무수행을 위하여 공적으로 사용되는 예산으로, 관련 법령과 예산집행기준에 따라 목적과 용도에 맞게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함.
-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관련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업무추진비의 사용 제한이나 부당 사용에 대한 제재 규정이 미흡하고, 교육 및 사용내역 점검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경우 내부통제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음.
- 현행 규칙 제8조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교육과 점검 및 후속조치를 임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, 실제 교육과 점검의 실시 여부가 재량에 맡겨질 수 있음

로 부당한 업무추진비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한계가 있음.

- 따라서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교육과 정기점검을 의무화하고 부당 사용이 확인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하도록 하여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본 개정규칙안의 입법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입법 적정성

- 안 제8조제1항은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교육을 “실시할 수 있다”에서 “실시하여야 한다”로 변경하여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는 것으로, 의원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과 사용 제한사항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여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취지임.
- 업무추진비의 부당 사용은 단순한 집행 착오뿐만 아니라 공적 의정활동과 무관한 사적 사용, 사용 제한 시간·장소에서의 집행 및 증빙자료 미비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,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관련 기준과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것이 필요함.
- 안 제8조제2항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점검 결과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“할 수 있다”에서 “취하여야 한다”로 변경하는 것으로, 위반행위에 대한 후속조치가 임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규칙의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.
- 국민권익위원회는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과 사용내역 점검을 의무화하고, 부당 사용이 확인된 경우 환수·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어 본 개정안은 개선권고의 취지에 부합함.
- 다만 교육과 점검을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데 그치지 않도록 교육의 실시 시기·횟수·내용과 사용내역 점검의 주기·방법 등을 내부계획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.
- 또한 점검 결과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환수,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가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객관적인 처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다. 법적 타당성

- 지방의회 업무추진비의 사용·집행·공개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운영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으로 의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함.
- 본 개정규칙안은 새로운 업무추진비 지급대상을 정하거나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, 기존에 규정된 교육·점검 및 후속조치의 이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교육과 정기점검의 의무화는 업무추진비 사용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는 사항이 아니라 공적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는 것으로, 그 목적과 수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.
-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점검 결과에 따라 환수나 징계 요구 등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, 고의 또는 과실 여부, 부당 사용금액 및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례성과 형평성이 확보되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임.
- 개정문은 제8조제1항의 “실시할 수 있다”를 “실시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의 “할 수 있다”를 “취하여야 한다”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문 간 체계나 문장 구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라. 결론

- 본 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의원 교육과 사용내역 점검을 의무화하고, 부당한 사

용이 확인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됨.

- 이를 통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여 부당 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고, 정기 점검과 후속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-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와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판단되며, 조문의 체계와 표현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